

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최초로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 지정, 서울시 고시 제154호(1984.3.30.)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제2020-180호(2020.05.01.)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391호 (2023.9.7.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9.7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79호(2024.12.26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09호(2025.4.17.)도시관리계획(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83호(2026.2.12.)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및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(변경)·정비계획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(강촌아파트)에 대하여,

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을 결정(변경)고시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28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사 업 명: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주체

가.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: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(조합장 이대우)

나. 주 소: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7길 14, 관리동 2층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위치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2, 403번지일원

나. 사업기간: 2021.10.~2033.06.

다. 건설주택규모 등

사업종류	구 분	사 업 내 용	비고
주택건설	대지면적	30,987.60㎡	-
	건축면적(건폐율)	10,717.78㎡(34.59%)	
	연 면 적(용적률)	234,873.55㎡(483.46%)	
	주 용 도	공동주택	
	동수 및 층수	9개동(공동주택 1,001세대), 지하5층/지상25층	
	리모델링 유형	수평증축(증 112세대)	

4.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

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
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

라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

5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강촌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되어 사용승인 28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[주거전용 면적 30%(40%)이내 증축, 세대수 15% 이내 증가]에 의한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도모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이촌동, 서빙고동 일대	858,098.6	-	858,098.6	건설부고시 131호 (1976.08.21.)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3.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4.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5. 건축물 배치·형태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가.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특별계획구역1	이촌동 415번지 일원	27,629.5	-	27,629.5	
기정	특별계획구역2	이촌동 399-1번지 일원	7,435.0	-	7,435.0	
기정	특별계획구역3	이촌동 404번지 일원	61,305.1	-	61,305.1	
기정	특별계획구역4	이촌동 412번지 일원	27,572.0	-	27,572.0	
기정	특별계획구역5	이촌동 402번지 일원	31,778.4	-	31,778.4	
기정	특별계획구역6	이촌동 300-157번지 일원	84,262.1	-	84,262.1	
기정	특별계획구역7	이촌동 300-301번지 일원	17,191.1	-	17,191.1	
기정	특별계획구역8	이촌동 300-11번지 일원	17,621.5	-	17,621.5	
기정	특별계획구역9	이촌동 301-170번지 일원	16,508.1	-	16,508.1	
기정	특별계획구역10	서빙고동 241-21번지 일원	114,584.8	-	114,584.8	

2.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(변경)

가. 특별계획구역1~4, 6~10 : 변경없음

나. 특별계획구역5 : 변경

구 분		계 획 지 침		비고
		기 정	변 경	
위 치		• 용산구 이촌동 402번지 일원	• 변경없음	
면 적		• 31,778.4㎡	• 변경없음	
용도지역		• 제3종일반주거지역	• 변경없음	
공공기여율		•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(순부담)비율 : 10% 내외 원칙	•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(순부담)비율 : 10% 내외 원칙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
공공시설 등 계획		• 공원위치지정 및 아파트 진·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검토	• 공원위치지정 및 아파트 진·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검토 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지침도에 따름
용도계획	허용용도	• 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	• 변경없음	
	권장용도	•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, 노유자시설, 작은도서관	• 변경없음	
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변경없음	
밀도계획	건폐율	• 50% 이하	• 변경없음	
	용적률	• 기준(허용)용적률 : 230% 이하 - 「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(2022.11)」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• 상한용적률 : 300% 이하	• 기준(허용)용적률 : 230% 이하 - 「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(2022.11)」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• 상한용적률 : 300% 이하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(허용)용적률 유지)
	높 이	• 서울시 도시기본계획, 도시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-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	• 변경없음	

구 분		계 획 지 침		비 고
		기 정	변 경	
건축선	건축한계선	•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: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• 그 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	•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: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• 그 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지침도에 따름
	벽면한계선	•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-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(11층 이상부터 적용)	•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-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(11층 이상부터 적용)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
대지 내 공지	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-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단, 이촌로81길(학교와 접한 도로)변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	• 변경없음	

구 분		계 획 지 침		비 고
		기 정	변 경	
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	가로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저층부 (1~2층)	● 이촌로변 - 저층부(1~2층)에 가로활성화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	● 이촌로변 - 저층부(1~2층)에 가로활성화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●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지침도에 따름
	배치 및 형태	● 공동주택 - 건축물 배치 시 「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」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(2020.01, 서울시)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-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-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, 판상형, 혼합형의 혼합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- 주거지로서의 차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,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-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● 부대 및 복리시설 -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-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/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~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	● 변경없음	

구 분		계 획 지 침		비 고
		기 정	변 경	
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	기타 외관요소	• 옥외설비 -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• 담장의 설치 - 원칙적으로 금지,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• 광고물 설치제한 -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-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	• 변경없음	
교통처리계획도		• 단지내 차량동선 -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통행구조로 조성 • 단지내 보행동선 -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- 보행축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, 커뮤니티시설 설치	• 변경없음	
기타에 관한 사항		•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-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등 • 사업방식은 다양한 사업방식이 검토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, 용적률, 공공기여 등은 해당 관련기준을 따름 ※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리모델링관련 시행지침 준수	• 변경없음	

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⑥ 리모델링 사업 추진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⑦ 기타에 관한 결정 사항 : 변경없음

Ⅲ. 특별계획구역5(강촌아파트) 세부개발계획 결정

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
1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특별계획구역5	이촌동 402번지 일원	31,778.4	-	31,778.4	강촌아파트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	31,778.4	-	31,778.4	100.0	-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31,778.4	-	31,778.4	100.0	-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14	12	국지 도로	214	이촌동 402	용산동6가 459	일반도로	-	-	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구모 결정조서

가구번호	필 지		비 고
	위 치	면적(m ²)	
J	용산구 이촌동402번지 일원	11,034.5	
K	용산구 이촌동 301-160번지 일원	77,180.0 (19,953.1)	

※ ()는 특별계획구역5 면적임

나. 특별계획(가능)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번호	면적(m ²)	위치	비고
기정	특별계획구역 ⑤	31,778.4	이촌동 301-7 (일부)	강촌APT
			이촌동 301-188	
			이촌동 301-190 (일부)	
			이촌동 301-194	
			이촌동 301-195	
			이촌동 402	
			이촌동 403	

※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허용용도	• 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	좌동	-
권장용도	[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(저층부 1~2층)] •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, 노유자시설, 작은도서관'(독서실)	-	-
불허용도(B)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좌동	-

나.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밀도 계획	건폐율 • 50% 이하	좌동	-
	용적률 • 기준(허용)용적률 : 230% 이하 - 「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(2022.11)」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• 상한용적률 : 300% 이하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485%이하 (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)	세부개발계획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시 결정
	높이 • 서울시 도시기본계획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-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	90m이하	-

다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

① 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건축선	건축한계선	-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: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- 그 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- 건축한계선 완화 3.0m → 2.80m 5.0m → 3.35~4.90m - 이촌로87길 및 이촌로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	-
	벽면한계선	-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(11층 이상부터 적용)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	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분	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대지내 공지	전면공지	-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-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- 단, 이촌로81길(학교와 접한 도로)변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	좌동	-

나.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

구분	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교통처리계획		- 단지내 차량동선 -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- 단지내 보행동선 -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-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, 커뮤니티시설 설치	좌동	-

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특별계획구역 내용	세부개발계획
위 치		•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02번지 일원	-
면적		• 31,778.4㎡	좌동
용도지역·지구		• 제3종 일반주거지역 - 재건축사업 추진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가능 (다양한 사업방식 검토)	좌동
공공기여율		•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(순부담) 비율 : 10% 내외 원칙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-
공공시설 등 계획		• 공원위치지정 및 아파트 진·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검토 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-
용도 계획	허용용도	• 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	좌동
	권장용도	[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(저층부 1~2층)] •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, 노유자시설, 작은도서관(독서실)	-
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좌동
밀도 계획	건폐율	• 50% 이하	좌동
	용적률	• 기준(허용)용적률 : 230% 이하 - 「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(2022.11)」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• 상한용적률 : 300% 이하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485%이하 (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)
	높이	• 서울시 도시기본계획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-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	90m이하
건축선	건축한계선	•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: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• 그 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• 건축한계선 완화 - 3.0m → 2.80m - 5.0m → 3.35~4.90m
	벽면한계선	• 지구통경축변(이촌로87길) -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(11층 이상부터 적용) •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• 이촌로87길 및 이촌로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

구 분		특별계획구역 내용	세부개발계획
대지내 공지	전면공지	-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-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- 단, 이촌로81길(학교와 접한 도로)변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	좌동
건축물 배치 및 형태	가로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저층부 (1~2층)	- 이촌로변 - 저층부(1~2층)에 가로활성화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4-3-2. 공동주택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	-
건축물 배치 및 형태	배치 및 형태	- 공동주택 - 건축물 배치 시 「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」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(2020.01, 서울시)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-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-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, 판상형,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- 주거지로서의 차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 하되,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-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(CPTED)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- 부대 및 복리시설 -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-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/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~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	좌동
	기타 외관요소	- 옥외설비 -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- 담장의 설치 - 원칙적으로 금지,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- 광고물 설치제한 -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-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	좌동
교통처리계획		- 단지내 차량동선 -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- 단지내 보행동선 -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-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, 커뮤니티시설 설치	좌동

구 분	특별계획구역 내용	세부개발계획
기타에 관한 사항	•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-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등 • 사업방식은 다양한 사업방식이 검토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, 용적률, 공공기여 등은 해당 관련기준을 따름 ※ 「주택법」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리모델링관련 시행지침 준수	좌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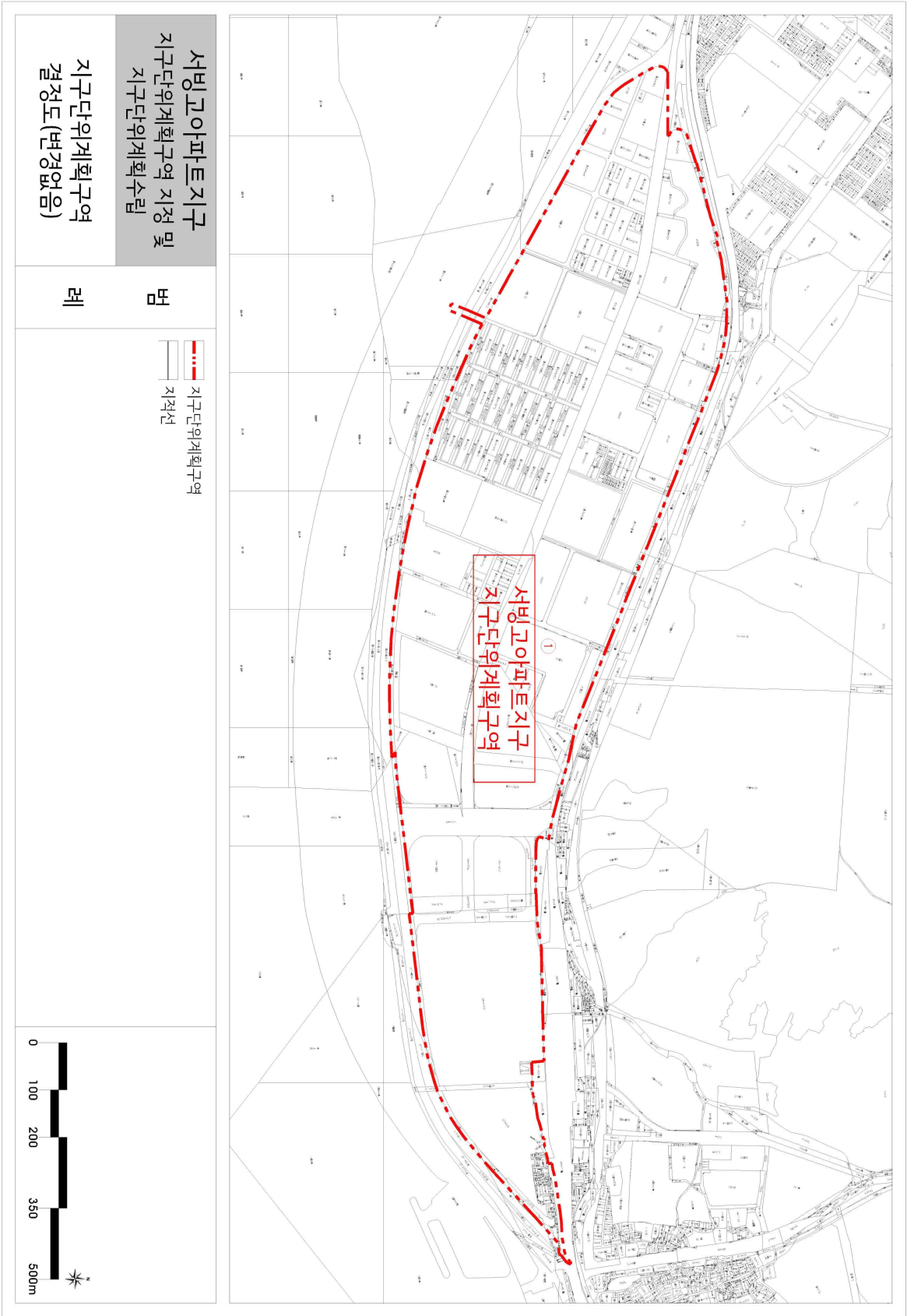
IV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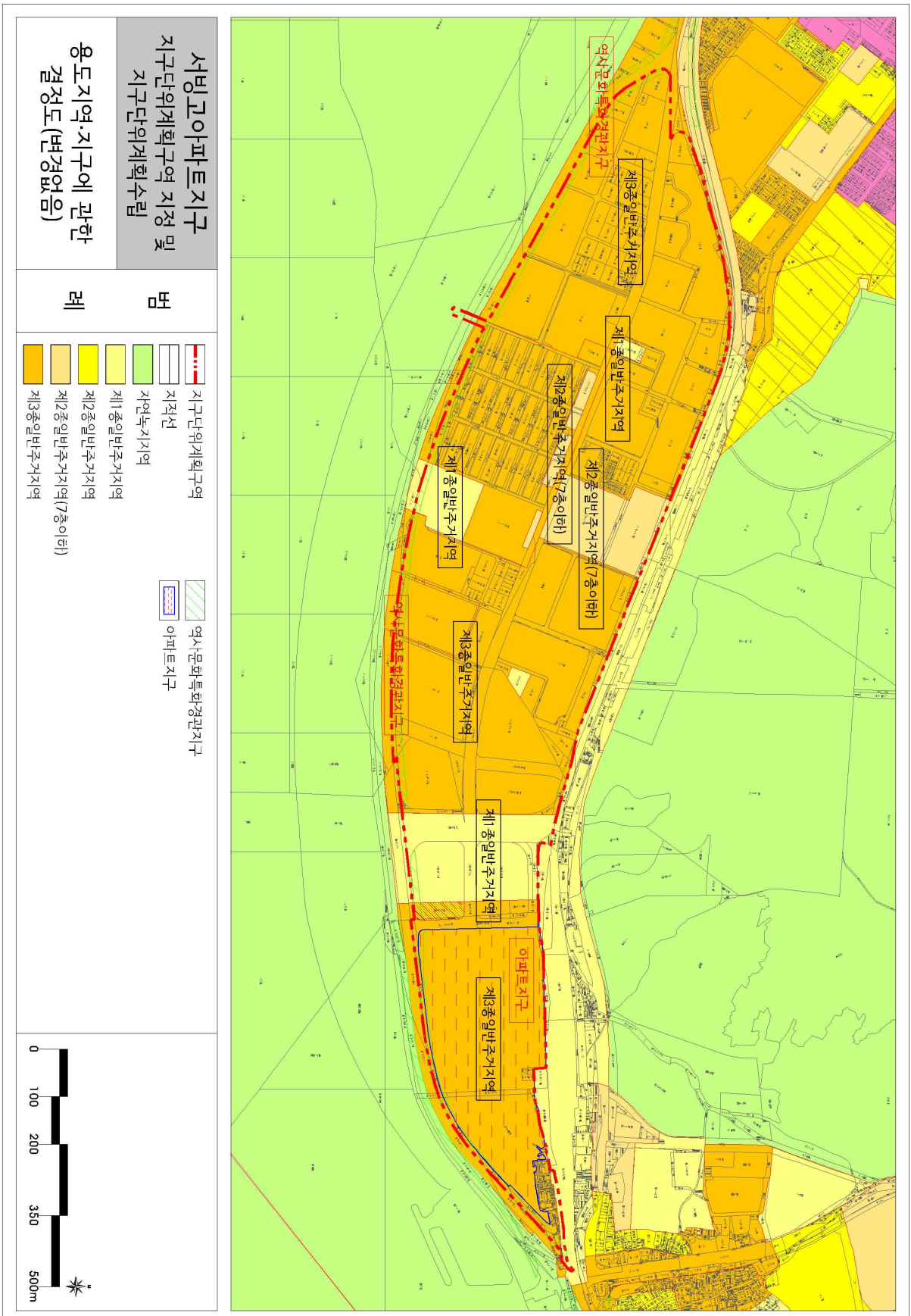
V. 관계도서는 용산구 주택과(☎450-7366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/>)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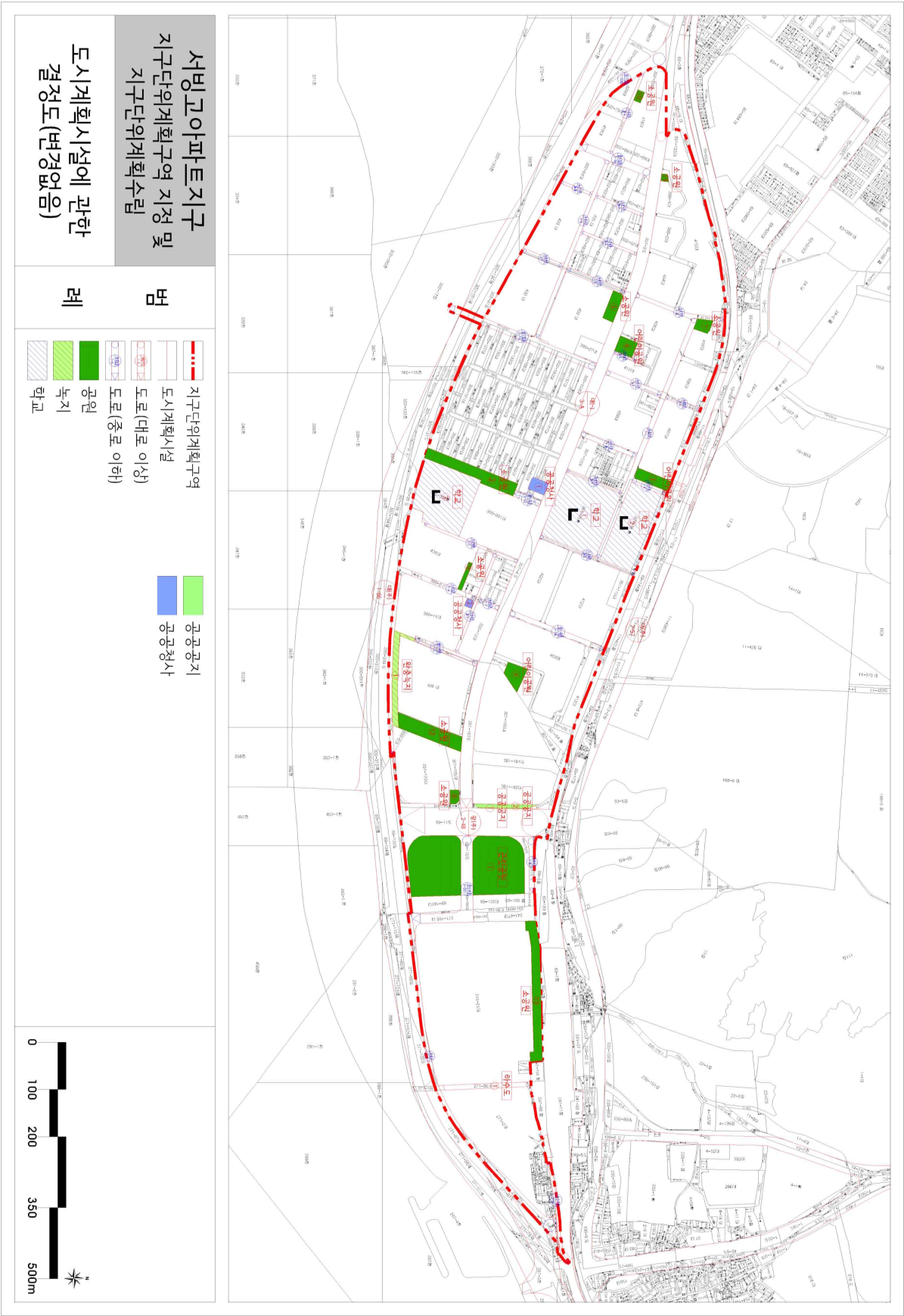
- 서빙고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(변경없음)



-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도 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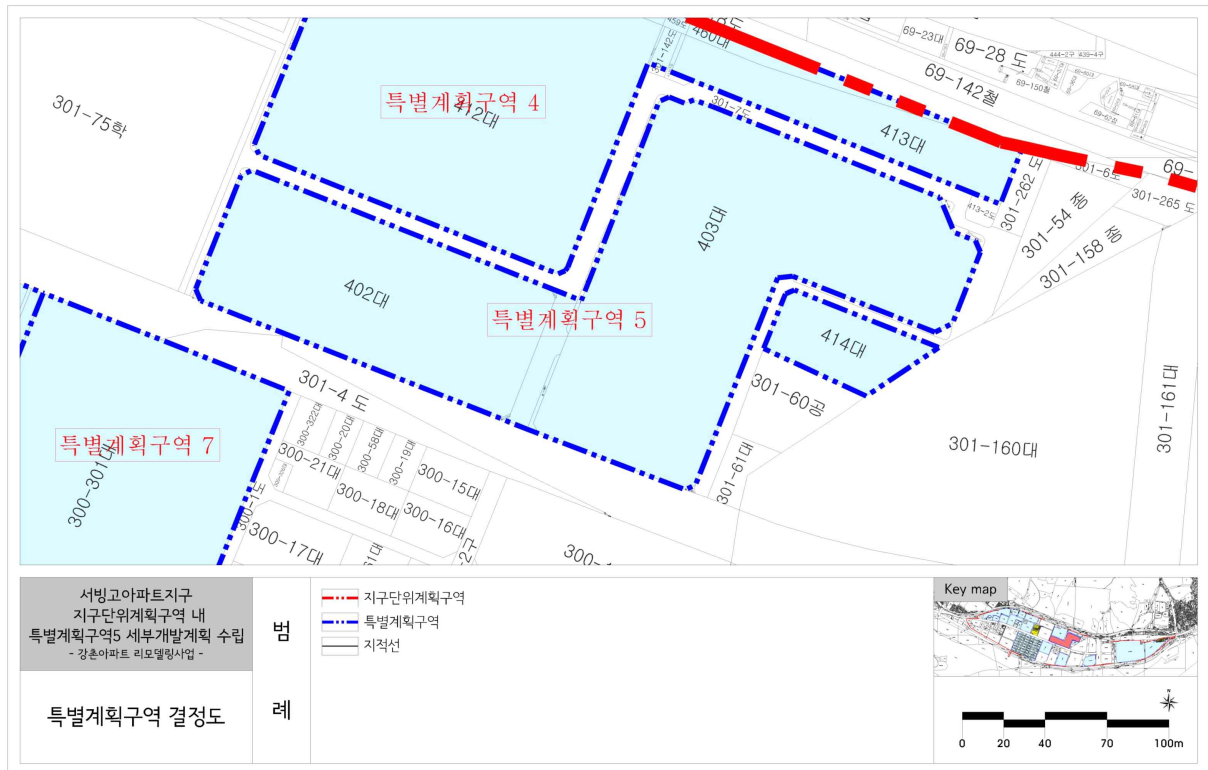


▪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(변경없음)



■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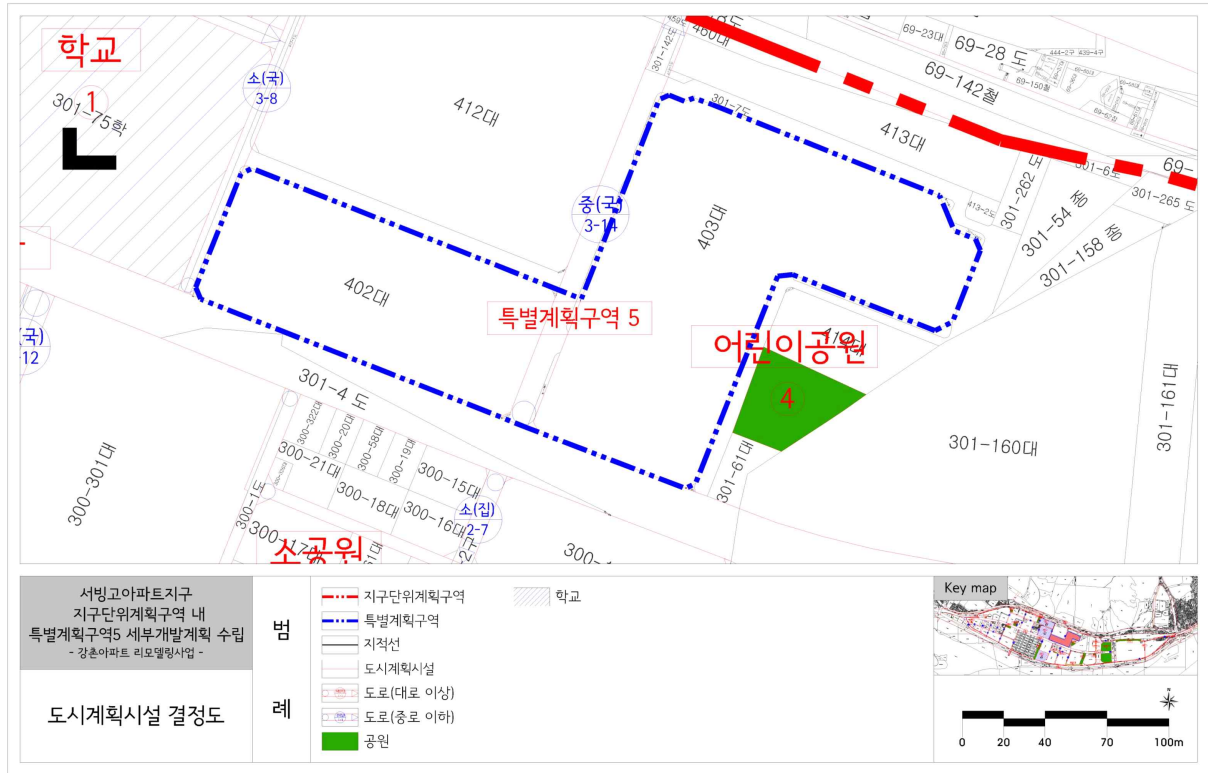
-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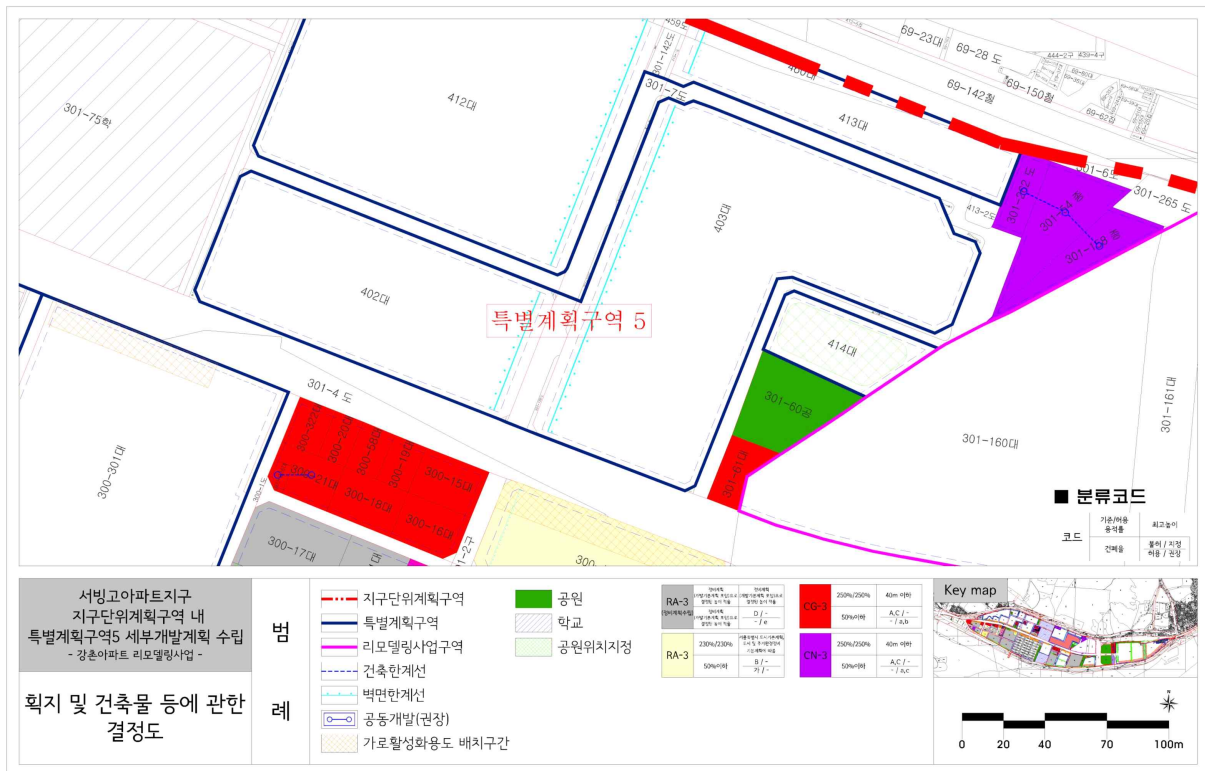
-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▪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▪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

서빙고아파트지구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
지구단위계획수립

특별계획구역5
종합지침도

범	례	지구단위계획구역	도로 확폭 검토구간
특별계획구역		특수계획시설	학교
도시계획시설		건축한계선	공원위치지정
건축한계선		벽면한계선	
벽면한계선		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	
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		공원	
공원			

Key map

0 20 40 70 100m

서빙고아파트지구
지구단위계획구역 내
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
-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-

세부개발계획 결정도

특별계획구역 5

- / 485% 90m이하
50%이하

분류코드

코드	기존지용 용지종	최고높이
인배출	농지용	최고높이

지구단위계획구역

특별계획구역

리모델링사업구역

건축한계선

벽면한계선

공동개발(권장)

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

공원

학교

공원위치지정

Key map

0 20 40 70 100m